

민간임대주택(가설주택으로 간주) 임대차계약에 대해서

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제도

2016년 구마모토 지진으로 인해 주거가 파괴(대규모 반파를 포함)되어, 스스로의 재력으로 주거를 확보할 수 없는 분을 대상으로 하여, 응급가설주택으로 민간임대주택을 구마모토시가 빌립니다.

※본인이 본 제도 조건에 해당되는 희망 주택을 찾아 신청하셔야 합니다.

입주자의 요건(모든 항목에 해당되어야 합니다)

- (1) 2016년 구마모토 지진 재해 시점(2016년 4월 14일)에, 구마모토시에 주소가 있는 분
- (2) 구마모토 지진으로 인한 재해로 주거가 파괴(대규모 반파를 포함)되어 거주할 주택이 없는 분
- (3) 스스로의 재력으로 주거를 확보할 수 없는 분
- (4) 재해구조법에 의거하는 주택응급수리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분

임대차주택의 조건(모든 항목에 해당되어야 합니다)

- (1) 집주인의 동의가 있을 것
- (2) 관리회사 등에 의해 임대차 가능성이 확인될 것
- (3) 집세가 한달에 6만엔 이하일 것(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한하지 않음). 다만, 대상 세대가 5명 이상(0~3세 어린이는 제외)일 경우에는 9만엔 이하일 것.

비용부담

- (1) 시 부담
 - 가. 집세
 - 나. 사례금(집세 1개월분을 한정 금액으로 함)
 - 다. 중개수수료(집세 0.54개월분을 한정 금액으로 함)
 - 라. 퇴거수리부담금(집세 2개월분을 한정 금액으로 함)
 - 마. 화재보험등 손해보험료(연간 1만엔을 한정 금액으로 함)
- (2) 입주자 부담
 - 가. 광열비, 관리비, 공익비, 주차요금, 자치회비 등
 - 나. 퇴거시 수리비가 퇴거수리부담금(집세 2개월분)을 상회할 경우, 그 부족한 금액

입주 기간

최장 2년간

임대차주택의 계약

임대주택의 집주인과의 임대차계약은 구마모토시의 별도 지정 「계약서」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.

필요한 서류

- 신청서
- 주민표(세대 전원)
- 이재증명서(사본 가능)

신청서 배부·상담창구

구마모토시청 14층에 임시 창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.

상담시간은 9시부터 17시까지(5월 16일 이후에는 16시까지)입니다.

문의처 · 연락처

도시건설국 건축주택부 건축정책과

전화 : 096-328-2438 kenchikuseisaku@city.kumamoto.lg.jp